

의안번호	제 95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
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

의안 번호	95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금연구역의 지정(안 제3조)
 - 도시공원,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 -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, 주유소
- 금연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- 과태료(안 제7조)
- 권한의 위임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흡연”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.
2. “간접흡연”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 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금연구역”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(금연구역 지정 등) ① 도지사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

4. 주유소

5.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, 해당 시장·군수와 협의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지정되면,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금연구역 변경 등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5조(금연구역 표시)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, 규격,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교육 및 홍보)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관련 단체 및

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과태료)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8조(권한의 위임)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의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
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4. 법 제34조제3항(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: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규정한 금연구역 외 구역 추가 지정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교육·홍보 추진

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금연교육 및 홍보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, 필요사업 홍보방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

나. 추계결과 : 250,000천원(향후 5년간)

구 분	홍보사업 추진
가. 재정수반요인	금연 홍보·교육
나. 추계의 전제	홍보 방법 및 규모
다. 추계결과	대상 : 도민, 예산 : 250,000천원
라. 재원조달방안	국비 50%, 도비 50%

※ 금연 홍보는 국비 매칭사업(기금 50%. 도비 50%)으로 도민이 대상이며, 전광판, 케이블TV, 버스광고 등 매체 및 캠페인을 통해 홍보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세 출	2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

작성자 :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우 경 수